

고 발 장

고 발 인 1.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서울 중구 수표로12길 8 정양빌딩 2층

상임운영위원 전명선, 박래군, 정세경

2. 이oo

남양주시 진건읍

3. 김oo

고양시 덕양구

○ 고발 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 주 소: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북촌창우극장빌딩 3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연락처: 02-3675-7740

피고발인 1. 김oo

2. 이oo

3. 임oo

고발인들은 고발외 고(故) 이광욱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김oo은 2013. 3. 15. 해양경찰청장에 임명된 자로서 2014. 4. 16.에 발생한 세월호 선박 침몰 사고(이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수난구조 활동의 총 책임자입니다.

피고발인 이oo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현장을 지휘·감독한 자입니다.

피고발인 임oo는 해양경찰청 구조대장으로서 피고발인 이oo의 지휘에 따라 민간 잠수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해양경찰청, 해군과 민간인이 함께 실종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직접, 혹은 언딘마린인더스트리나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를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할 민간 잠수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고발외 고(故) 이광욱은 민간 잠수사로서 위 모집에 응하여 2014. 5. 4. 진도에 갔고 2014. 5. 5. 경비정을 타고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약 1.5마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던 언딘 리베로호에 도착하였습니다.

2014. 5. 6. 06:07경 고발외 고(故) 이광욱은 수색 작업을 위해 잠수하였다가 같은 날 06:13경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이후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같은 날 07:36경 후

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더리베로호에서 함께 수색 작업을 진행한 민간 잠수사 고발외 공우영은 고발외 고(故) 이광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수난구호에 관한 법령

1) 수난구호의 총괄, 지휘·통제 및 수행의 주체로서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적용되던 구 수난구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난구호법') 제5조제1항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제13조 본문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 수난구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은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분부장·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서, 수난구호 업무의 주체로서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휘·통제하게 됩니다.

2) 구조대의 편성·운영 주체로서의 해양경찰청장 등

구 수난구호법 제7조제1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구조본부의 장이 수난구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와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3) 현장지휘의 주체로서의 해양경찰청

구 수난구호법 제17조제1항은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 제2항은 현장지휘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조난현장에서의 인명의 수색구조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현장접근 통제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색구조를 지휘하고, 수난구호민간단체 혹은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인력 및 장비를 배치·운용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 교육 역시 해양경찰청이 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을 통한 동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본문은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본부장은 민간인에게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령에 따라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피고발인 김oo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맡았습니다. 지방구조본부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휘 체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당시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하던 민간 잠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oo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서 수색 현장을 지휘·감독하고, 피고발인 임oo가 해양경찰청 구조대장으로서 피고발인 이oo의 지휘에 따라 민간 잠수사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할 사람들의 모집과 인력 배치, 운용은 해양경찰청의 권한인바, 고발외 고(故) 이광욱을 수색 작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 그 과정에서 자격증의 소지 여부나 건강 상황 등 작업에 참여가 적합한지 여부는 해양경찰청이 결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외 고(故) 이광욱은 해양경찰청의 이러한 인력 배치 결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유의 경비정을 타고 수색 작업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참고로 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 대상자들의 서약서에는 '해양경찰의 규칙과 제반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있고 '잠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된 경우, 해경의 직권으로 업무 수행 중단 및 귀가 조치할 수 있으며 잠수사가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은 해양경찰청, 해군, 민간이 영역을 나눠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 상태와 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발인 이oo가 수색 여부 및 수색 구역을 결정하고, 피고발인 임oo가 이러한 결정 사항을 민간 잠수사들에게 통보하였던바, 민간 잠수사들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색 작업에 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외 공우영이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 체계상 해양경찰청의 지시 없이는 민간 잠수사가 독자적으로 수색을 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이 부담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수색 작업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해양경찰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은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발외 고(故) 이광욱은 동료 잠수사와 소방대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만을 받고 제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양경찰청이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면 고발외 고(故) 이광욱이 사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발외 고(故) 이광욱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지휘, 감독하였으며 응급처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해양경찰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수난구호명령을 받고 동원된, 당시 민간 잠수사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하던 고발외 공우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외 고(故) 이광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민간 잠수사의 안전 관리에 있어 사전·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자 피고발인들을 고발합니다.

5. 결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고발외 고(故) 이광욱의 경우와 같이 세월호 참사에 도움을 주다 희생한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하여도,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동료 민간 잠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민간 잠수사로서 세월호 참사에 있어 수색 작업 도중 발생한 고발외 고(故) 이광욱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방 법

1. 해양경찰청장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징구한 서약서
2. 2014. 5. 5.자, 2014. 5. 6.자 각 잠수사 로그북
3. 서해지방경찰청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2015. 5. 26.

고발 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서울중앙검찰청 귀중